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9 선고 2024가단530495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1. 8.

판결 선고2024. 11. 2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59,727,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6. 27.부터 2024. 8. 5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가.항 기재 돈 중 금 42,241,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59,727,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

6. 2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가. 피고 B에 대하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C에 대하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서윤

별지